

장위자이 레디언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예방·방역 절차 등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운영예정**으로 견본주택 입장 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서 **장위자이 레디언트** 검색 후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https://xi.co.kr/jw4>) 방문 '**사전예약**' 클릭 후 접수 및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https://xi.co.kr/jw4>) 및 대표전화(☎ 1833-2644)로 문의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견본주택 방문시 **예방·방역절차 등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운영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제한(LTV 등), 청약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일반공급 |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처분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포함)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장위자이 레드언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xi.co.kr/jw4>)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및 거주 의무(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기준일 | 기간 | 관련법령 |
|-------|----------|-----|--------------------|
| 전매제한 | 당첨자발표일 | 8년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거주 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2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 재당첨제한 | 당첨자발표일 |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 **전매 제한**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 (2022.12.16.)부터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계약자가 부기등기에 포함하여야 할 표기내용 :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당첨자발표일 (2022.12.16.)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 **거주 의무** : 본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제5항, 제6항에 따라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거주의무자가 부기등기에 포함하여야 할 표기내용 :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당첨자발표일(2022.12.16.)부터 10년간]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단독지분을 공유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함.
-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내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가격으로 산정함.
- 10.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 구분 | 공급세대 | 접수 | 정당당첨자 계약 ② | 잔여세대 | | 잔여세대 추가계약① | 주택소유 판단 |
|---------|------|---------|------------|--------|--------|------------|---------------------------|
| | | | | 미분양(가) | 미계약(나) | | |
| A유형(타입) | 100 | 200(경쟁) | 100 | X | X | - | ② 주택소유 |
| B유형(타입) | 100 | 200(경쟁) | 80 | X | 20 | 20 | ② 주택소유 / (나) 주택소유 |
| C유형(타입) | 100 | 50(미달) | 30 | 50 | 20 | 70 * | ② 주택소유 / (가), (나) 주택소유 아님 |
| D유형(타입) | 100 | 50(미달) | 50 | 50 | X | 50 * | ② 주택소유 / (가) 주택소유 아님 |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 경합 | 주택수 | 적용기준 |
|--|-----|-----------------------|
|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소형·저가 | 1 |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 규칙 제53조 5호(20㎡이하) ⊕ 소형·저가 | 2 |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
| 규칙 제53조 각호 ⊕ 제5호(20㎡이하) | 1 | 5호 미적용 |
|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0 | 모두 적용 |
| 규칙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소형·저가 | 1 |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청약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 | 일반공급 1순위(해당)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 일반공급 1순위(기타) (서울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자격확인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 계약체결 |
|----|--|--|--|-----------------------|------------------------------|--|---|
| 일정 | 2022.12.06.(화) | 2022.12.07.(수) | 2022.12.08.(목) | 2022.12.09.(금) | 2022.12.16.(금) | 2022.12.17.(토) ~2022.12.26.(월) | 2022.12.27.(화) ~2022.12.29.(목)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7:00) - 사전 방문 예약제(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 |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 은행에 따라 다르니 해당 은행에 확인 바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우선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1377호(2022.1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7~31층 31개동 총 2,840세대[조합 1,026세대(보류지 10세대 포함), 임대 484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1,330세대
[특별공급 374세대(일반[기관추천] 71세대, 다자녀가구 71세대, 신혼부부 145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7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 동일 주택형 중 복수의 단지에 공급하는 주택형(59A, 59B, 59E, 72, 84A, 84D, 84F)의 경우 특정단지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청약 신청 기준 | 약식표기 |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 민영주택 | 2022000835 | 01 | 049.9400B | 49B_4 | 49.9400 | 27.9280 | 77.8680 | 39.2500 | 117.1180 | 29.8953 | 54 | 5 | 5 | 10 | 1 | 5 | 26 | 28 | 3 | |
| | | 02 | 049.9600C | 49C_4 | 49.9600 | 27.7070 | 77.6670 | 39.2660 | 116.9330 | 29.8181 | 21 | 2 | 2 | 4 | - | 2 | 10 | 11 | 1 | |
| | | 03 | 049.8200D | 49D_4 | 49.8200 | 27.4650 | 77.2850 | 39.1560 | 116.4410 | 29.6715 | 30 | 3 | 3 | 6 | - | 3 | 15 | 15 | 2 | |
| | | 04 | 049.9800E | 49E_4 | 49.9800 | 27.6760 | 77.6560 | 39.2820 | 116.9380 | 29.8139 | 17 | 1 | 1 | 3 | - | 1 | 6 | 11 | 1 | |
| | | 05 | 059.9700A | 59A_2 | 59.9700 | 27.1100 | 87.0800 | 50.5260 | 137.6060 | 33.4320 | 72 | 7 | 7 | 14 | 2 | 7 | 37 | 35 | 12 | |
| | | | | 59A_3 | 59.9700 | 26.1140 | 86.0840 | 54.9550 | 141.0390 | 33.0496 | | | | | | | | | | |
| | | | | 59A_4 | 59.9700 | 25.7680 | 85.7380 | 47.1330 | 132.8710 | 32.9168 | | | | | | | | | | |
| | | 06 | 059.9900B | 59B_2 | 59.9900 | 27.3520 | 87.3420 | 50.5430 | 137.8850 | 33.5326 | 120 | 12 | 12 | 24 | 3 | 12 | 63 | 57 | 6 | |
| | | | | 59B_3 | 59.9900 | 27.2020 | 87.1920 | 54.9740 | 142.1660 | 33.4750 | | | | | | | | | | |
| | | 07 | 059.9900C | 59C | 59.9900 | 28.1190 | 88.1090 | 47.1490 | 135.2580 | 33.8271 | 27 | 2 | 2 | 5 | - | 2 | 11 | 16 | 2 | |
| | | 08 | 059.9800D | 59D | 59.9800 | 28.3490 | 88.3290 | 47.1410 | 135.4700 | 33.9115 | 17 | 1 | 1 | 3 | - | 1 | 6 | 11 | 11 | 2 |
| | | | | 59E_2 | 59.9900 | 26.3210 | 86.3110 | 50.5430 | 136.8540 | 33.1368 | | | | | | | | | | |
| | | | | 59E_3 | 59.9900 | 26.1760 | 86.1660 | 54.9740 | 141.1400 | 33.0811 | | | | | | | | | | |
| | | 09 | 059.9900E | 59E_4 | 59.9900 | 27.4720 | 87.4620 | 47.1490 | 134.6110 | 33.5787 | 30 | 3 | 3 | 6 | - | 3 | 15 | 15 | 5 | |
| | | | | 72_1 | 72.9900 | 26.6700 | 99.6600 | 60.1670 | 159.8270 | 38.2617 | | | | | | | | | | |
| | | | | 72_2 | 72.9900 | 26.6360 | 99.6260 | 61.4950 | 161.1210 | 38.2487 | | | | | | | | | | |
| 10 | 072.9900 | 72_3 | 72.9900 | 26.8470 | 99.8370 | 66.8860 | 166.7230 | 38.3297 | 354 | 35 | 35 | 70 | 10 | 35 | 185 | 169 | 22 | | | |
| | | 84A_1 | 84.9900 | 28.2350 | 113.2250 | 70.0590 | 183.2840 | 43.4697 | | | | | | | | | | | | |
| | | 84A_2 | 84.9900 | 27.6300 | 112.6200 | 71.6050 | 184.2250 | 43.2374 | | | | | | | | | | | | |
| 11 | 084.9900A | 84A_4 | 84.9900 | 31.6610 | 116.6510 | 66.7970 | 183.4480 | 44.7850 | 273 | - | - | - | - | - | - | 273 | 24 | | | |
| | | 84B | 84.9800 | 25.6650 | 110.6450 | 71.5970 | 182.2420 | 42.4791 | | | | | | | | | | | | |
| 12 | 084.9800B | 84D_1 | 84.8900 | 30.3630 | 115.2530 | 69.9770 | 185.2300 | 44.2483 | 189 | - | - | - | - | - | - | - | 189 | 11 | | |
| | | 84D_2 | 84.8900 | 32.3800 | 117.2700 | 71.5200 | 188.7900 | 45.0226 | | | | | | | | | | | | |
| | | 84D_4 | 84.8900 | 32.5510 | 117.4410 | 66.7200 | 184.1610 | 45.0883 | | | | | | | | | | | | |
| 14 | 084.8700E | 84E | 84.8700 | 33.7450 | 118.6150 | 69.9600 | 188.5750 | 45.5390 | 1 | - | - | - | - | - | - | 1 | - | | | |
| 15 | 084.9500F | 84F_2 | 84.9500 | 27.2740 | 112.2240 | 71.5720 | 183.7960 | 43.0853 | 88 | - | - | - | - | - | - | - | 88 | 5 | | |
| | | 84F_4 | 84.9500 | 32.0260 | 116.9760 | 66.7660 | 183.7420 | 44.9098 | | | | | | | | | | | | |
| 16 | 097.8600 | 97 | 97.8600 | 34.1080 | 131.9680 | 80.6690 | 212.6370 | 50.6655 | 15 | - | - | - | - | - | - | 15 | 4 | | | |
| 합계 | | | | | | | | | | | 1,330 | 71 | 71 | 145 | 16 | 71 | 374 | 956 | 102 | |

※ 본 아파트는 총 4개 단지로 구분되며, 단지 구분, 단지별 주변여건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약식표기 후단의 “_1”, “_2”, “_3”, “_4” 부기 표기는 단지 표기이며,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주거공용면적 차이로 인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상이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세대, 원)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구분 (층)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50%) | | | | | 잔금(40%) 입주지정일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공급금액 |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
| | | | | | | | | | 2023-04-03 | 2023-09-04 | 2024-02-05 | 2024-07-04 | 2024-12-04 | |
| 049.9400B | 54 | 1층 | 2 | 282,420,000 | 345,180,000 | - | 627,600,000 | 62,760,000 | 62,760,000 | 62,760,000 | 62,760,000 | 62,760,000 | 62,760,000 | 251,040,000 |
| | | 2층 | 2 | 288,405,000 | 352,495,000 | - | 640,900,000 | 64,090,000 | 64,090,000 | 64,090,000 | 64,090,000 | 64,090,000 | 64,090,000 | 256,360,000 |
| | | 3~4층 | 6 | 294,435,000 | 359,865,000 | - | 654,300,000 | 65,430,000 | 65,430,000 | 65,430,000 | 65,430,000 | 65,430,000 | 65,430,000 | 261,720,000 |
| | | 5~9층 | 15 | 298,440,000 | 364,760,000 | - | 663,200,000 | 66,320,000 | 66,320,000 | 66,320,000 | 66,320,000 | 66,320,000 | 66,320,000 | 265,280,000 |
| | | 10~15층 | 15 | 300,420,000 | 367,180,000 | - | 667,600,000 | 66,760,000 | 66,760,000 | 66,760,000 | 66,760,000 | 66,760,000 | 66,760,000 | 267,040,000 |
| | | 16~19층 | 6 | 306,450,000 | 374,550,000 | - | 681,0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272,400,000 |
| | | 20층 이상 | 8 | 312,435,000 | 381,865,000 | - | 694,30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277,720,000 |
| 049.9600C | 21 | 1층 | 1 | 281,655,000 | 344,245,000 | - | 625,900,000 | 62,590,000 | 62,590,000 | 62,590,000 | 62,590,000 | 62,590,000 | 62,590,000 | 250,360,000 |
| | | 2층 | 1 | 287,685,000 | 351,615,000 | - | 639,30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255,720,000 |
| | | 3~4층 | 2 | 293,670,000 | 358,930,000 | - | 652,600,000 | 65,260,000 | 65,260,000 | 65,260,000 | 65,260,000 | 65,260,000 | 65,260,000 | 261,040,000 |
| | | 5~9층 | 5 | 297,630,000 | 363,770,000 | - | 661,400,000 | 66,140,000 | 66,140,000 | 66,140,000 | 66,140,000 | 66,140,000 | 66,140,000 | 264,560,000 |
| | | 10~15층 | 6 | 299,655,000 | 366,245,000 | - | 665,900,000 | 66,590,000 | 66,590,000 | 66,590,000 | 66,590,000 | 66,590,000 | 66,590,000 | 266,360,000 |
| | | 16~19층 | 1 | 305,640,000 | 373,560,000 | - | 679,200,000 | 67,920,000 | 67,920,000 | 67,920,000 | 67,920,000 | 67,920,000 | 67,920,000 | 271,680,000 |
| | | 20층 이상 | 5 | 311,625,000 | 380,875,000 | - | 692,50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69,250,000 | 277,000,000 |
| 049.8200D | 30 | 1층 | 2 | 277,470,000 | 339,130,000 | - | 616,600,000 | 61,660,000 | 61,660,000 | 61,660,000 | 61,660,000 | 61,660,000 | 61,660,000 | 246,640,000 |
| | | 2층 | 2 | 283,410,000 | 346,390,000 | - | 629,800,000 | 62,980,000 | 62,980,000 | 62,980,000 | 62,980,000 | 62,980,000 | 62,980,000 | 251,920,000 |
| | | 3~4층 | 4 | 289,305,000 | 353,595,000 | - | 642,900,000 | 64,290,000 | 64,290,000 | 64,290,000 | 64,290,000 | 64,290,000 | 64,290,000 | 257,160,000 |
| | | 5~9층 | 10 | 293,220,000 | 358,380,000 | - | 651,600,000 | 65,160,000 | 65,160,000 | 65,160,000 | 65,160,000 | 65,160,000 | 65,160,000 | 260,640,000 |
| | | 10~15층 | 10 | 295,200,000 | 360,800,000 | - | 656,0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262,400,000 |
| | | 20층 이상 | 2 | 306,990,000 | 375,210,000 | - | 682,200,000 | 68,220,000 | 68,220,000 | 68,220,000 | 68,220,000 | 68,220,000 | 68,220,000 | 272,880,000 |
| | | 049.9800E | 17 | 3~4층 | 2 | 290,700,000 | 355,300,000 | - | 646,0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 5~9층 | 5 | 294,615,000 | | 360,085,000 | - | 654,700,000 | 65,470,000 | 65,470,000 | 65,470,000 | 65,470,000 | 65,470,000 | 65,470,000 | 261,880,000 | |
| 10~15층 | 6 | 296,595,000 | | 362,505,000 | - | 659,100,000 | 65,910,000 | 65,910,000 | 65,910,000 | 65,910,000 | 65,910,000 | 65,910,000 | 263,640,000 | |
| 16~19층 | 3 | 302,535,000 | | 369,765,000 | - | 672,30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67,230,000 | 268,920,000 | |
| 20층 이상 | 1 | 308,475,000 | | 377,025,000 | - | 685,500,000 | 68,550,000 | 68,550,000 | 68,550,000 | 68,550,000 | 68,550,000 | 68,550,000 | 274,200,000 | |
| 059.9700A | 72 | 1층 | 7 | 323,415,000 | 395,285,000 | - | 718,700,000 | 71,870,000 | 71,870,000 | 71,870,000 | 71,870,000 | 71,870,000 | 71,870,000 | 287,480,000 |
| | | 2층 | 12 | 330,255,000 | 403,645,000 | - | 733,900,000 | 73,390,000 | 73,390,000 | 73,390,000 | 73,390,000 | 73,390,000 | 73,390,000 | 293,560,000 |
| | | 3~4층 | 24 | 337,140,000 | 412,060,000 | - | 749,200,000 | 74,920,000 | 74,920,000 | 74,920,000 | 74,920,000 | 74,920,000 | 74,920,000 | 299,680,000 |
| | | 5~9층 | 29 | 341,730,000 | 417,670,000 | - | 759,40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303,760,000 |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구분 (층)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중도금(50%) | | | | | 잔금(4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공급금액 | 계약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입주지정일 |
| | | | | | | | | | 2023-04-03 | 2023-09-04 | 2024-02-05 | 2024-07-04 | 2024-12-04 | |
| 059.9900B | 120 | 1층 | 3 | 321,120,000 | 392,480,000 | - | 713,600,000 | 71,360,000 | 71,360,000 | 71,360,000 | 71,360,000 | 71,360,000 | 71,360,000 | 285,440,000 |
| | | 2층 | 5 | 327,960,000 | 400,840,000 | - | 728,800,000 | 72,880,000 | 72,880,000 | 72,880,000 | 72,880,000 | 72,880,000 | 72,880,000 | 291,520,000 |
| | | 3~4층 | 12 | 334,800,000 | 409,200,000 | - | 744,0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297,600,000 |
| | | 5~9층 | 30 | 339,345,000 | 414,755,000 | - | 754,100,000 | 75,410,000 | 75,410,000 | 75,410,000 | 75,410,000 | 75,410,000 | 75,410,000 | 301,640,000 |
| | | 10~15층 | 36 | 341,640,000 | 417,560,000 | - | 759,200,000 | 75,920,000 | 75,920,000 | 75,920,000 | 75,920,000 | 75,920,000 | 75,920,000 | 303,680,000 |
| | | 16~19층 | 20 | 348,435,000 | 425,865,000 | - | 774,300,000 | 77,430,000 | 77,430,000 | 77,430,000 | 77,430,000 | 77,430,000 | 77,430,000 | 309,720,000 |
| | | 20층 이상 | 14 | 355,275,000 | 434,225,000 | - | 789,500,000 | 78,950,000 | 78,950,000 | 78,950,000 | 78,950,000 | 78,950,000 | 78,950,000 | 315,800,000 |
| 059.9900C | 27 | 1층 | 1 | 323,955,000 | 395,945,000 | - | 719,900,000 | 71,990,000 | 71,990,000 | 71,990,000 | 71,990,000 | 71,990,000 | 71,990,000 | 287,960,000 |
| | | 2층 | 1 | 330,840,000 | 404,360,000 | - | 735,200,000 | 73,520,000 | 73,520,000 | 73,520,000 | 73,520,000 | 73,520,000 | 73,520,000 | 294,080,000 |
| | | 3~4층 | 4 | 337,725,000 | 412,775,000 | - | 750,500,000 | 75,050,000 | 75,050,000 | 75,050,000 | 75,050,000 | 75,050,000 | 75,050,000 | 300,200,000 |
| | | 5~9층 | 10 | 342,315,000 | 418,385,000 | - | 760,700,000 | 76,070,000 | 76,070,000 | 76,070,000 | 76,070,000 | 76,070,000 | 76,070,000 | 304,280,000 |
| | | 10~15층 | 9 | 344,610,000 | 421,190,000 | - | 765,800,000 | 76,580,000 | 76,580,000 | 76,580,000 | 76,580,000 | 76,580,000 | 76,580,000 | 306,320,000 |
| | | 20층 이상 | 2 | 358,425,000 | 438,075,000 | - | 796,500,000 | 79,650,000 | 79,650,000 | 79,650,000 | 79,650,000 | 79,650,000 | 79,650,000 | 318,600,000 |
| 059.9800D | 17 | 2층 | 2 | 331,650,000 | 405,350,000 | - | 737,0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294,800,000 |
| | | 3~4층 | 4 | 338,580,000 | 413,820,000 | - | 752,400,000 | 75,240,000 | 75,240,000 | 75,240,000 | 75,240,000 | 75,240,000 | 75,240,000 | 300,960,000 |
| | | 5~9층 | 9 | 343,170,000 | 419,430,000 | - | 762,600,000 | 76,260,000 | 76,260,000 | 76,260,000 | 76,260,000 | 76,260,000 | 76,260,000 | 305,040,000 |
| | | 20층 이상 | 2 | 359,280,000 | 439,120,000 | - | 798,400,000 | 79,840,000 | 79,840,000 | 79,840,000 | 79,840,000 | 79,840,000 | 79,840,000 | 319,360,000 |
| 059.9900E | 30 | 1층 | 1 | 324,810,000 | 396,990,000 | - | 721,80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288,720,000 |
| | | 2층 | 4 | 331,740,000 | 405,460,000 | - | 737,200,000 | 73,720,000 | 73,720,000 | 73,720,000 | 73,720,000 | 73,720,000 | 73,720,000 | 294,880,000 |
| | | 3~4층 | 10 | 338,625,000 | 413,875,000 | - | 752,500,000 | 75,250,000 | 75,250,000 | 75,250,000 | 75,250,000 | 75,250,000 | 75,250,000 | 301,000,000 |
| | | 5~9층 | 15 | 343,215,000 | 419,485,000 | - | 762,700,000 | 76,270,000 | 76,270,000 | 76,270,000 | 76,270,000 | 76,270,000 | 76,270,000 | 305,080,000 |
| 072.9900 | 354 | 1층 | 20 | 365,715,000 | 446,985,000 | - | 812,700,000 | 81,270,000 | 81,270,000 | 81,270,000 | 81,270,000 | 81,270,000 | 81,270,000 | 325,080,000 |
| | | 2층 | 22 | 373,500,000 | 456,500,000 | - | 830,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332,000,000 |
| | | 3~4층 | 44 | 381,285,000 | 466,015,000 | - | 847,300,000 | 84,730,000 | 84,730,000 | 84,730,000 | 84,730,000 | 84,730,000 | 84,730,000 | 338,920,000 |
| | | 5~9층 | 109 | 386,460,000 | 472,340,000 | - | 858,800,000 | 85,880,000 | 85,880,000 | 85,880,000 | 85,880,000 | 85,880,000 | 85,880,000 | 343,520,000 |
| | | 10~15층 | 88 | 389,025,000 | 475,475,000 | - | 864,500,000 | 86,450,000 | 86,450,000 | 86,450,000 | 86,450,000 | 86,450,000 | 86,450,000 | 345,800,000 |
| | | 16~19층 | 27 | 396,810,000 | 484,990,000 | - | 881,800,000 | 88,180,000 | 88,180,000 | 88,180,000 | 88,180,000 | 88,180,000 | 88,180,000 | 352,720,000 |
| | | 20층 이상 | 44 | 404,595,000 | 494,505,000 | - | 899,100,000 | 89,910,000 | 89,910,000 | 89,910,000 | 89,910,000 | 89,910,000 | 89,910,000 | 359,640,000 |
| 084.9900A | 273 | 1층 | 15 | 416,295,000 | 508,805,000 | - | 925,100,000 | 92,510,000 | 92,510,000 | 92,510,000 | 92,510,000 | 92,510,000 | 92,510,000 | 370,040,000 |
| | | 2층 | 24 | 425,160,000 | 519,640,000 | - | 944,800,000 | 94,480,000 | 94,480,000 | 94,480,000 | 94,480,000 | 94,480,000 | 94,480,000 | 377,920,000 |
| | | 3~4층 | 48 | 434,025,000 | 530,475,000 | - | 964,500,000 | 96,450,000 | 96,450,000 | 96,450,000 | 96,450,000 | 96,450,000 | 96,450,000 | 385,800,000 |
| | | 5~9층 | 119 | 439,920,000 | 537,680,000 | - | 977,600,000 | 97,760,000 | 97,760,000 | 97,760,000 | 97,760,000 | 97,760,000 | 97,760,000 | 391,040,000 |
| | | 10~15층 | 43 | 442,845,000 | 541,255,000 | - | 984,100,000 | 98,410,000 | 98,410,000 | 98,410,000 | 98,410,000 | 98,410,000 | 98,410,000 | 393,640,000 |
| | | 16~19층 | 10 | 451,710,000 | 552,090,000 | - | 1,003,800,000 | 100,380,000 | 100,380,000 | 100,380,000 | 100,380,000 | 100,380,000 | 100,380,000 | 401,520,000 |
| | | 20층 이상 | 14 | 460,575,000 | 562,925,000 | - | 1,023,500,000 | 102,350,000 | 102,350,000 | 102,350,000 | 102,350,000 | 102,350,000 | 102,350,000 | 409,400,000 |
| 084.9800B | 22 | 3~4층 | 4 | 407,565,000 | 498,135,000 | - | 905,700,000 | 90,570,000 | 90,570,000 | 90,570,000 | 90,570,000 | 90,570,000 | 90,570,000 | 362,280,000 |
| | | 5~9층 | 8 | 413,055,000 | 504,845,000 | - | 917,900,000 | 91,790,000 | 91,790,000 | 91,790,000 | 91,790,000 | 91,790,000 | 91,790,000 | 367,160,000 |
| | | 10~15층 | 6 | 415,845,000 | 508,255,000 | - | 924,100,000 | 92,410,000 | 92,410,000 | 92,410,000 | 92,410,000 | 92,410,000 | 92,410,000 | 369,640,000 |
| | | 16~19층 | 4 | 424,170,000 | 518,430,000 | - | 942,600,000 | 94,260,000 | 94,260,000 | 94,260,000 | 94,260,000 | 94,260,000 | 94,260,000 | 377,040,000 |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구분 (층)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중도금(50%) | | | | | 잔금(4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공급금액 | 계약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입주지정일 |
| | | | | | | | | | 2023-04-03 | 2023-09-04 | 2024-02-05 | 2024-07-04 | 2024-12-04 | |
| 084.8900D | 189 | 1층 | 2 | 414,900,000 | 507,100,000 | - | 922,000,000 | 92,200,000 | 92,200,000 | 92,200,000 | 92,200,000 | 92,200,000 | 92,200,000 | 368,800,000 |
| | | 2층 | 8 | 423,765,000 | 517,935,000 | - | 941,700,000 | 94,170,000 | 94,170,000 | 94,170,000 | 94,170,000 | 94,170,000 | 94,170,000 | 376,680,000 |
| | | 3~4층 | 24 | 432,585,000 | 528,715,000 | - | 961,300,000 | 96,130,000 | 96,130,000 | 96,130,000 | 96,130,000 | 96,130,000 | 96,130,000 | 384,520,000 |
| | | 5~9층 | 57 | 438,435,000 | 535,865,000 | - | 974,300,000 | 97,430,000 | 97,430,000 | 97,430,000 | 97,430,000 | 97,430,000 | 97,430,000 | 389,720,000 |
| | | 10~15층 | 47 | 441,405,000 | 539,495,000 | - | 980,900,000 | 98,090,000 | 98,090,000 | 98,090,000 | 98,090,000 | 98,090,000 | 98,090,000 | 392,360,000 |
| | | 16~19층 | 24 | 450,225,000 | 550,275,000 | - | 1,000,500,000 | 100,050,000 | 100,050,000 | 100,050,000 | 100,050,000 | 100,050,000 | 100,050,000 | 400,200,000 |
| | | 20층 이상 | 27 | 459,045,000 | 561,055,000 | - | 1,020,100,000 | 102,010,000 | 102,010,000 | 102,010,000 | 102,010,000 | 102,010,000 | 102,010,000 | 408,040,000 |
| 084.8700E | 1 | 1층 | 1 | 419,085,000 | 512,215,000 | - | 931,300,000 | 93,130,000 | 93,130,000 | 93,130,000 | 93,130,000 | 93,130,000 | 93,130,000 | 372,520,000 |
| 084.9500F | 88 | 1층 | 2 | 400,500,000 | 489,500,000 | - | 890,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356,000,000 |
| | | 2층 | 4 | 409,005,000 | 499,895,000 | - | 908,900,000 | 90,890,000 | 90,890,000 | 90,890,000 | 90,890,000 | 90,890,000 | 90,890,000 | 363,560,000 |
| | | 3~4층 | 10 | 417,555,000 | 510,345,000 | - | 927,900,000 | 92,790,000 | 92,790,000 | 92,790,000 | 92,790,000 | 92,790,000 | 92,790,000 | 371,160,000 |
| | | 5~9층 | 22 | 423,225,000 | 517,275,000 | - | 940,500,000 | 94,050,000 | 94,050,000 | 94,050,000 | 94,050,000 | 94,050,000 | 94,050,000 | 376,200,000 |
| | | 10~15층 | 20 | 426,060,000 | 520,740,000 | - | 946,800,000 | 94,680,000 | 94,680,000 | 94,680,000 | 94,680,000 | 94,680,000 | 94,680,000 | 378,720,000 |
| | | 16~19층 | 12 | 434,565,000 | 531,135,000 | - | 965,700,000 | 96,570,000 | 96,570,000 | 96,570,000 | 96,570,000 | 96,570,000 | 96,570,000 | 386,280,000 |
| | | 20층 이상 | 18 | 443,115,000 | 541,585,000 | - | 984,700,000 | 98,470,000 | 98,470,000 | 98,470,000 | 98,470,000 | 98,470,000 | 98,470,000 | 393,880,000 |
| 097.8600 | 15 | 2층 | 4 | 497,790,000 | 553,100,000 | 55,310,000 | 1,106,200,000 | 110,620,000 | 110,620,000 | 110,620,000 | 110,620,000 | 110,620,000 | 110,620,000 | 442,480,000 |
| | | 3~4층 | 7 | 508,140,000 | 564,600,000 | 56,460,000 | 1,129,200,000 | 112,920,000 | 112,920,000 | 112,920,000 | 112,920,000 | 112,920,000 | 112,920,000 | 451,680,000 |
| | | 20층 이상 | 4 | 539,235,000 | 599,150,000 | 59,915,000 | 1,198,300,000 | 119,830,000 | 119,830,000 | 119,830,000 | 119,830,000 | 119,830,000 | 119,830,000 | 479,320,000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 전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https://xi.co.kr/jw4>)**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 구분(주택형) | | 049.9400B | 049.9600C | 049.8200D | 049.9800E | 059.9700A | 059.9900B | 059.9900C | 059.9800D | 059.9900E | 072.9900 | 합 계 |
|----------------------|--------------------------------|-----------|-----------|-----------|-----------|-----------|-----------|-----------|-----------|-----------|----------|-----|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1 | - | - | 1 | 2 | 1 | - | 1 | 5 | 12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1 | - | 1 | - | 1 | 1 | - | 1 | - | 5 | 10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1 | 1 | - | 2 | 3 | - | - | 1 | 9 | 18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 | 1 | 3 | - | - | - | 7 | 11 |
| | 장애인 | 2 | - | 1 | 1 | 2 | 3 | 1 | - | 1 | 9 | 20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 3 | 1 | 2 | 1 | 4 | 6 | 1 | 1 | 2 | 18 | 39 |
| |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경기도(50%) | 2 | 1 | 1 | - | 3 | 6 | 1 | - | 1 | 17 | 3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0 | 4 | 6 | 3 | 14 | 24 | 5 | 3 | 6 | 70 | 145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 | - | - | 2 | 3 | - | - | - | 10 | 1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5 | 2 | 3 | 1 | 7 | 12 | 2 | 1 | 3 | 35 | 71 |
| 합계 | | 26 | 10 | 15 | 6 | 37 | 63 | 11 | 6 | 15 | 185 | 374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단수 처리기준 : 소수점 이하 절상[(예시) 9세대 공급시 : 우선공급(70%) - 7세대 배정, 일반공급(30%) - 2세대 배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 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p>■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p>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배우자의 전혼 자녀 등)</p> |
| 청약자격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현장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자격요건 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71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당첨 및 계약불가]
-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 추천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서울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없음 |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제대군인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중소기업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원칙** :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거 '추천대상자'로 사업주체에 선정·통보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로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시 당첨자로 확정합니다. (단,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현황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로 결격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 **예비대상자 유의사항** : 추천기관에서 선정·추천된 '예비대상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도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대상 세대 중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미달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7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순]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1)+(2)+(3)+(4)+(5)+(6) | | |
| (1) 미성년 자녀수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2) 영유아 자녀수 | 15 | 영유아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 | 영유아 2명 | 10 | |
| | | 영유아 1명 | 5 | |
| (3)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4)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6)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 [별표 3])

- ①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②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③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④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⑥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208,935원~ 7,450,721원 | 7,200,810원~ 8,640,971원 | 7,326,073원~ 8,791,286원 | 7,779,826원~ 9,335,790원 | 8,233,579원~ 9,880,294원 | 8,687,332원~ 10,424,797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 8,692,508원 | 7,200,810원~ 10,081,133원 | 7,326,073원~ 10,256,501원 | 7,779,826원~ 10,891,755원 | 8,233,579원~ 11,527,009원 | 8,687,332원~ 12,162,26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 9,934,294원 | 8,640,972원~ 11,521,294원 | 8,791,287원~ 11,721,715원 | 9,335,791원~ 12,447,720원 | 9,880,295원~ 13,173,725원 | 10,424,798원~ 13,899,730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가소득이 없는 경우 |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해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가구원수 적용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 근로자 |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
| | 근무월수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
| 사업자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
| |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별 소득 확인 기준 연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07.01.~ 12.31.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 무주택인 경우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1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투기과열지역)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 충족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11.16.)]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11.16.)] [별표 3])

- ①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②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③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④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⑥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1인 가구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가구원수 적용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 근로자 |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
| | 근무월수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
| 사업자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
| |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별 소득 확인 기준 연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07.01.~ 12.31.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 | | |
|------------|---------------------|---|---|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거주구분 |
| 1순위 | 전용 85㎡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②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전용 85㎡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청약 불가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
| | 2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 구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공급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이상 ~ 3년미만 | 4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 |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15년이상 | 17 | |
| 총점 | 84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이주로 인한 거주지 변경으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IV 청약일정, 신청방법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신청 대상자 | |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 신청방법 및 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2022.12.06.(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97-1)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2022.12.07.(수) 09:00~17: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1순위(기타)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2022.12.08.(목) 09:00~17:30 | |
| | 2순위 | | 2022.12.09.(금) 09:00~17:30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 방문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정보취약계층 방문청약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접수일에 견본주택 방문접수(접수 가능시간 :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 접수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접수(창구 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 입주자모집공고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참고) ※ 견본주택 방문신청 접수시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에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 |

V 당첨자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2.16.(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순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2.12.16.(금) ~ 2022.12.25.(일)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2.12.1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부여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20.11.25.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② 나머지 **25%**의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세대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조건 승낙이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시 청약자가 입력(선택)한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여 당첨자 또는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사항,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제한사항이 발생하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또한, 당첨(계약)취소 세대는 공급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 제출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 특별공급 | 당첨자 전원 | 2022.12.17.(토) ~ 2022.12.26.(월) 10:00 ~ 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97-1 (☎ 1833-2644)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문예약제 -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 (https://xi.co.kr/jw4) |
| | 일반공급 | | | | |
|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 | | |
| | 일반공급 | | | | |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https://xi.co.kr/jw4)**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
| 공통서류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정보취약자 건본주택 특별공급 접수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시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 ○ | | 피부양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피부양직계비속 |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피부양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진단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일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인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건본주택 비치)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소득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가구원 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 | | ○ | 소득증빙서류 | |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 피부양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 관계 확인 | |
| | ○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피부양직계존속 배우자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피부양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상기 제 증명서류(신청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정보취약자(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의 건본주택 방문청약시 상기 해당 접수유형별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서류구분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납부자)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
| 공통 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가점제 당첨자 및 가점제 예비 입주자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 | ○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VII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비고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2.12.27.(화) ~ 2022.12.29.(목) 10:00 ~ 17:00 |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97-1) | 사전방문 예약제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 (https://xi.co.kr/jw4) |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본인 계약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 인감도장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 ○ | | 정부수입인지 |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예금잔액증명서, 차용증,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 |
| | | ○ |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 | | |
|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산세가 최고 300%까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NH농협은행 | 301-0319-3894-91 |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
| 중도금 / 잔금 | NH농협은행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NH농협은행 301-0319-3894-91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 잔여세대 발생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체결조건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역 내 모든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세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추첨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 받은 경우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처분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공급계약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본 아파트는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중도금대출은 계약금 완납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50% 범위(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기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총액을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납부시(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공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근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

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정책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 주체에 따라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가전옵션] 선택품목으로 구분되며, **납부 계좌도 상이하오니 계약 및 입금 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 기본형 | 878,000 | 3,961,000 | 4,250,000 | 4,640,000 | 3,885,000 | 5,711,000 | 5,088,000 | 5,080,000 | 4,230,000 | 3,588,000 | 4,370,000 | 4,562,000 | 4,563,000 | 4,559,000 | 5,145,000 | 5,337,000 |
| 고급형 | 11,300,000 | 14,280,000 | 14,120,000 | 14,510,000 | 17,500,000 | 17,160,000 | 17,100,000 | 17,500,000 | 18,210,000 | 17,610,000 | 19,370,000 | 20,560,000 | 20,560,000 | 22,450,000 | 21,260,000 | 22,220,000 |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장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시공사[지에스건설(주)] 간 기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라 발코니확장은 지에스건설(주)가 시공하며, 발코니창호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시공하므로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주체가 상이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급대금의 [기본형], [고급형]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급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가전/가구/마감재/평면선택 관련 옵션 등) 중 일부 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형 선택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타 유의사항” [기본형 발코니세대 : 비확장세대]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 조명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내역 | • 벽면시트패널 • 유럽산 포셀린타일 벽면 • 건축화조명 + 천장판넬 • 단천장 및 리니어조명 • 신발장 하부조명 • 특화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 히든도어(다용도실) - 59B만 해당 | | | | | | | | | | | | | | | |
|------|--|-----------|-----------|-----------|-----------|-----------|-----------|-----------|-----------|-----------|-----------|-----------|-----------|-----------|-----------|-----------|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공급대금 | 6,680,000 | 6,860,000 | 7,060,000 | 7,580,000 | 7,840,000 | 9,360,000 | 8,270,000 | 8,180,000 | 7,710,000 | 8,450,000 | 8,840,000 | 8,530,000 | 8,460,000 | 9,320,000 | 8,620,000 | 9,210,000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jw4>)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주방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하부서랍장 하드웨어(수입산) • 독립형 후드(국내산) • 상부 전동식 플랩장 • 유럽산 세라믹타일 상판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스마트 주방TV(13인치)
- 전기쿡탑 [3구 인덕션 또는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택 1)]

선택1 : [전기쿡탑 3구 인덕션 선택] 주방 Style Up 공급대금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 공급대금 | 12,200,000 | 14,860,000 | 16,830,000 | 16,990,000 | 13,580,000 | 13,640,000 | 13,320,000 | 13,340,000 | 13,700,000 | 14,230,000 | 15,700,000 | 15,090,000 | 15,350,000 | 14,950,000 | 17,070,000 | 17,770,000 |

선택2 : [전기쿡탑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선택] 주방 Style Up 공급대금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 공급대금 | 11,430,000 | 14,090,000 | 16,060,000 | 16,220,000 | 12,810,000 | 12,870,000 | 12,550,000 | 12,570,000 | 12,930,000 | 13,460,000 | 14,930,000 | 14,320,000 | 14,580,000 | 14,180,000 | 16,300,000 | 17,000,000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jw4>)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욕실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면, 바닥) • 특화매입등 • 수전 및 도기류[세면대, 양변기(비데 일체형)] 고급형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 공급대금 | 4,830,000 | 4,830,000 | 4,830,000 | 4,830,000 | 8,810,000 | 8,810,000 | 8,810,000 | 8,810,000 | 8,810,000 | 8,910,000 | 8,910,000 | 8,810,000 | 8,880,000 | 8,810,000 | 8,810,000 | 9,090,000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jw4>)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침실1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 안방 슬라이딩장 | - | - | - | - | 2,800,000 | 2,560,000 | 2,560,000 | 2,560,000 | 2,800,000 | - | - | - | - | - | - | 2,800,000 |
| 안방 슬라이딩장 + 드레스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40,000 | - | - |
| 안방 슬라이딩장 + 복도 장식장 | - | - | - | - | - | - | - | - | - | 3,600,000 | 3,600,000 | - | - | - | 3,600,000 | - |
| 안방 슬라이딩장 + 복도 장식장 + 드레스룸 | - | - | - | - | - | - | - | - | - | - | - | 4,010,000 | 3,940,000 | - | - | -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jw4>)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개별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 침실 불박이장 1개소 | 1,130,000 | - | 1,130,000 | 1,130,000 | 1,510,000 | 1,130,000 | 1,130,000 | 1,130,000 | 1,510,000 | 1,130,000 | 1,320,000 | 1,130,000 | 1,320,000 | 1,130,000 | 1,130,000 | 1,130,000 |
| 현관 중문 (3연동 자동) | - | - | - | -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2,210,000 |
| 키큰장 수납특화 | - | - | - | -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1,940,000 |
| 히든도어 침실 가족욕실 다용도실 ※ 마감조명 Style Up 선택시 | 3,590,000 | 3,590,000 | 2,680,000 | 3,590,000 | 4,490,000 | 3,590,000 *다용도실 히든도어 제외 | 4,490,000 | 4,490,000 | 4,490,000 | 4,490,000 | 4,490,000 | 4,490,000 | 4,490,000 | 4,490,000 | 4,490,000 | 5,390,000 |

바닥 마감 (전 주택형)

| 구분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 [선택1] 각 침실 강마루 +거실 복도 주방 유럽산 포셀린타일 | 1,400,000 | 1,590,000 | 1,770,000 | 1,700,000 | 1,610,000 | 1,740,000 | 1,760,000 | 1,740,000 | 1,600,000 | 1,890,000 | 2,300,000 | 2,100,000 | 2,110,000 | 2,320,000 | 2,220,000 | 2,170,000 *주방 Style Up 선택시 (2,550,000) |
| [선택2] 각 침실 원목마루 +거실 복도 주방 유럽산 포셀린타일 | 4,340,000 | 4,360,000 | 4,590,000 | 4,310,000 | 5,040,000 | 5,160,000 | 5,140,000 | 5,160,000 | 5,020,000 | 5,760,000 | 6,590,000 | 6,300,000 | 6,310,000 | 6,120,000 | 6,450,000 | 5,640,000 *주방 Style Up 선택시 (5,690,000) |
| [선택3] 전실 원목마루 | 5,640,000 | 5,850,000 | 6,240,000 | 5,900,000 | 6,550,000 | 6,790,000 | 6,780,000 | 6,790,000 | 6,520,000 | 7,530,000 | 8,740,000 | 8,260,000 | 8,290,000 | 8,300,000 | 8,530,000 | 7,660,000 |

-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jw4>)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침실 불박이장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jw4>)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납부계좌 | | | | 납부일정 | | | |
|-------|--------|---------|-----------------------|------------------|-----------|---------------|--------|
| 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
| | | 계약금 |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계약금 (10%) | 중도금 (20%) | 잔금 (70%) | |
| 발코니확장 | 별도안내예정 | 계약금 |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시 | 2023-04-03(월) | 입주지정기간 |
| | |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공급계약서 참조) | | | | |
| 플러스옵션 | KB국민은행 | 계약금 | 006001-04-335570 | 지에스건설(주) | 계약시 | 2023-04-03(월) | 입주지정기간 |
| | |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공급계약서 참조) | | | |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플러스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각각 발코니확장과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전옵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 설치 장소 | 공급금액 | 제조사 | 비고 |
|-------------------|-----|----|----------------------------|-----------|------|----|
| 49B/C/D/E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310,000 | LG전자 | |
|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4,550,000 | | |
| 59A/B/C/D/E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310,000 | | |
|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 4,550,000 | | |
| | 선택3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5,890,000 | | |
| 72 84A/B/D/E/F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490,000 | | |
|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 4,820,000 | | |
| | 선택3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개소 | 6,440,000 | | |
| 97 | 선택1 | 2대 | 거실 + 침실1 | 3,490,000 | | |
| | 선택2 | 3대 |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 4,820,000 | | |
| | 선택3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개소 | 6,440,000 | | |
| | 선택4 | 5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7,610,000 | |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공급업체 | 비고 |
|---------|------|----|------------|-----------|-----------|----|
| 49B | 선택 1 | 2대 | 거실+침실1 | 1,700,000 | 자이에스앤디(주) | |
| | 선택 2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2,620,000 | | |
| 49C/D/E | 선택 1 | 2대 | 거실+주방 | 1,840,000 | | |
| | 선택 2 | | 거실+침실1 | 1,700,000 | | |
| | 선택 3 | 3대 | 거실+주방+침실1 | 2,620,000 | | |

| 주택형 | 선택안 |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공급업체 | 비고 |
|------------------------------------|------|----|------------------------|-----------|------|----|
| 59A/B/C/D/E, 72, 84A/B/D/E/F | 선택 4 | 4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 | 3,400,000 | | |
| | 선택 1 | 2대 | 거실+주방 | 1,840,000 | | |
| | 선택 2 | | 거실+침실1 | 1,700,000 | | |
| | 선택 3 | 3대 | 거실+주방+침실1 | 2,620,000 | | |
| | 선택 4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4,180,000 | | |
| 97 | 선택 1 | 2대 | 거실+주방 | 1,840,000 | | |
| | 선택 2 | | 거실+침실1 | 1,700,000 | | |
| | 선택 3 | 3대 | 거실+주방+침실1 | 2,620,000 | | |
| | 선택 4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 4 | 4,960,000 | | |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전 선택품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제조사 | 모델명 | 공급금액 | 비고 | |
|-------|-----------|------|------------|-------------|-----------|------------------|
| 전 주택형 | 빌트인 냉장고 | LG전자 | S715SI24B | 5,750,000 | 홈바형 | |
| | | | S695SI34B | 7,650,000 | 디스펜서형 | |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 K221PR14B | 1,450,000 | 김치냉장고 | |
| | 광파오븐 | | MZ385EBTAD | 540,000 | 드로워 포함 | |
| | 식기세척기 | | DUB22S | 1,100,000 | - | |
| | 쿡탑 | | LG전자 | BEI3GTBI | 1,220,000 | 인덕션3구 |
| | | | 쿠쿠 | CIHR-D303FB | 450,000 |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 1구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전옵션 선택품목 공급일정 및 납부계좌

| 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 | 가전옵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주방가전) | 신한은행 | |
| | |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자이에스앤디(주) |

- 가전옵션 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주방가전 선택품목)의 계약주체는 (주)자이S&D(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 주체)이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납부 계좌와 상이하오니 계약 및 입금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입주예정일 : 2025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 내진중요도 I 등급 :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m 이상 | 2.7m(지하1층 일반택배 차량 진입 가능), 2.3m(그외 주행로) | 2.7m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독서실)

※ 부대시설 중 작은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집기는 카탈로그 및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https://xi.co.kr/jw4>) CLUB XIAN 이미지에 구현된 것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단, 커피포트, 토스트기, 식기, 기타 소모품 등은 제외되며 설치 집기의 디자인 및 색상 등은 CLUB XIAN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1단지 | 2단지 | 3단지 | 4단지 | 공통 |
|---|---|---|---|---|
|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3구역 2. 신 청 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4. 청 능 등 급</p> <p>1) 소용량환풍급 2) 환기환풍급 3) 생활환풍급 4) 구조환풍급</p> |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3구역 2. 신 청 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4. 청 능 등 급</p> <p>1) 소용량환풍급 2) 환기환풍급 3) 생활환풍급 4) 구조환풍급</p> |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3구역 2. 신 청 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4. 청 능 등 급</p> <p>1) 소용량환풍급 2) 환기환풍급 3) 생활환풍급 4) 구조환풍급</p> |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4구역 2. 신 청 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4. 청 능 등 급</p> <p>1) 소용량환풍급 2) 환기환풍급 3) 생활환풍급 4) 구조환풍급</p> |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p> <p>1. 건축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3구역 2. 신 청 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4. 청 능 등 급</p> <p>1) 소용량환풍급 2) 환기환풍급 3) 생활환풍급 4) 구조환풍급</p> |
|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함, 제16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호,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9년 11월 1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함, 제16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호,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9년 11월 1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함, 제16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호,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9년 11월 1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함, 제16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호,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9년 11월 1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제2호 시범사업 건축물 관련 규정별시 제2호 시범사업 (시행 2017.1.26)</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1. 건축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3구역 2. 신 청 자: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4. 청 능 등 급</p> <p>1) 소용량환풍급 2) 환기환풍급 3) 생활환풍급 4) 구조환풍급</p>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가)]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1구역 | 인증번호 | K08-19-1558 |
| 건축주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인증기관 |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공공(여)일일 | 2022년 9월 | 유효기간 | 2019. 11. 01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29층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29층 |
| 면 적 | 142,618.86㎡ | 면 적 | 142,618.86㎡ |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가)]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2구역 | 인증번호 | K08-19-1559 |
| 건축주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인증기관 |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공공(여)일일 | 2022년 9월 | 유효기간 | 2019. 11. 01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29층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29층 |
| 면 적 | 127,688.83㎡ | 면 적 | 127,688.83㎡ |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가)]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3구역 | 인증번호 | K08-19-1560 |
| 건축주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인증기관 |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공공(여)일일 | 2022년 9월 | 유효기간 | 2019. 11. 01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29층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29층 |
| 면 적 | 72,343.57㎡ | 면 적 | 72,343.57㎡ |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가)]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4구역 | 인증번호 | K08-19-1561 |
| 건축주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인증기관 |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공공(여)일일 | 2023년 9월 | 유효기간 | 2019. 11. 01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구 광역동 62-1번지 일대 |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31층 | 용 소 | 기타 3종, 지상 31층 |
| 면 적 | 88,762.66㎡ | 면 적 | 88,762.66㎡ |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설 계 자 | ㈜쌍용종합건축사사무소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인증 개요 | | 인증 등급 | |
|-------|---------------------|-------|----------------|
| 건축물명 | 경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1구역 | 인증번호 | K08-19-1557 |
| 인증기관 |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 등급) |
| 인증기간 | 2019. 11. 01 - | 인증기관 |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 등급) | 인증기간 | 2019. 11. 01 - |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2022. 10. 19. 15. 11

한국부동산원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고기밀성 창호 | 적용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및 제8조 창의 기밀성능을 준수 |
| 단열조치 | 적용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2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3호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적용(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세대내 현관 별도 회로로 구성된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구로 정의되는 LED 조명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절수형설비 설치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12022-101-0007100호 | ₩ 696,184,98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스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항 목 | 내 용 | 금 액 |
|------------------------|--|-----------------|
| 1. 택지비 | 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택지비 | 702,502,541,397 |
| 2. 직접 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 235,160,369,606 |
| 3.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 95,407,233,528 |
| 4.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5,822,592,136 |
| 5.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2,218,130,338 |
| 6.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16,220,078,094 |
| 7.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102,977,742,120 |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항목 | 금액 | 산출근거 |
|----------------------------|-----------------|------|
| 합계 | 286,471,897,769 | |
| 말뚝박기 공사비 | - | |
| 암석지반 공사비 | 4,731,439,896 | 조정 |
| 흙막이 및 차수벽 | 14,158,092,517 | 조정 |
| 지하공사 특수공법 | - | |
| 방음시설 설치비 | - | |
| 간선시설 설치비용 | - | |
| 도시공원 설치비용 | - | |
| 지장물 철거비용 | 16,156,177,775 | 조정 |
|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 | - | |
| 감정평가 수수료 | 667,143,400 | 인정 |
| 감정평가 검토 수수료 | - | |
|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비용(토지가액+공사비) | 123,831,331,755 | 조정 |
| 그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126,927,712,426 | 조정 |
|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 - | |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한 경비 | - | |

| 항목 | 금액 | 산출근거 |
|----------------------|-----------------|------|
| 합계 | 102,977,742,120 | |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등 구조형식 | - | |
| 아파트 외 공동주택의 테라스 등 설치 | - | |
| 공동주택성능등급 | 8,393,327,297 | 인정 |
|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 - | |
| 사업승인 조건부 | 53,019,624,071 | 조정 |
| 법정초과 복리시설 | 2,969,651,429 | 조정 |
| 인텔리전트설비 | 28,286,429,199 | 조정 |
| 초고층주택 | - | |
|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 | - | |
| 시공 및 분양 보증수수료 | 1,402,525,826 | 조정 |
| 후분양 기간이자 | - |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7,663,017,996 | 인정 |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주택 | - | |
|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 1,243,166,302 | 조정 |
|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 | - |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기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 구수미 감정평가 사무소 |
|--------|-----------------|-----------------|
| 감정평가금액 | 415,768,216,596 | 416,293,070,660 |

마이너스옵션 품목 및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등)에서 입주자가 직접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구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1. 바닥 |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침실 <타일,석재> 현관, 거실, 복도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발코니 바닥, 발코니배수구 | 바닥난방+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
| 2. 벽 |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타일,시트지,MDF판), 주방벽체타일, 경량칸막이, 걸레받이 | 단열+석고보드+미장, 발코니 벽체도장, 건식벽체 |
| 3. 천장 | 초배지, 천장지, 반자 돌림, 천장 도장, 몰딩, MDF판, 우물천장 인테리어 | 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도장 |
| 4. 조명기구 | 조명기구 일체 | 전기배관, 전기배선, 전기콘센트, 전기구스위치, 매입박스 |
| 5. 욕실 | 욕실바닥/벽체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천장재, 석재(대리석 선반), 재료 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바닥 배수구, 욕실 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샤워 부스, 욕실장,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액세서리류 | 방수(바닥, 조적벽체), 조적벽, 설비배관(급수,급탕등매입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배선, 전기배관, 통신배관, 통신배선 |
| 6. 주방 |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주방 벽체타일, 주방TV, |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전기배선, |

| | | |
|---------|---|--|
| | 주방수전, 씽크볼, 렌지후드, 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일체 | 통신배관, 통신배선(주방TV등의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
| 7. 일반가구 |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침실불박이장, 시스템장) | - |
| 8. 창호 | 목창호(문틀, 상부 마감판, 문선, 문짝, 손잡이철물, 경첩외하드웨어일체), 디지털도어락 | 목창호가틀, 플라스틱 창호 내외창(인가도면 기준), 현관 방화문, 대피공간 방화문, 하향식피난구, 실외기실그릴창 |
| 9. 기타 | 발코니수전 |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냉매배관(해당실)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주택형 | 49B | 49C | 49D | 49E | 59A | 59B | 59C | 59D |
|--------------|------------|------------|------------|------------|------------|------------|------------|------------|
|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 23,874,329 | 23,812,702 | 23,695,581 | 23,809,330 | 25,837,146 | 26,320,512 | 26,551,647 | 26,849,206 |
| 주택형 | 59E | 72 | 84A | 84B | 84D | 84E | 84F | 97 |
|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 26,426,811 | 28,513,447 | 34,116,266 | 31,600,212 | 34,347,312 | 33,876,444 | 33,934,738 | 38,600,640 |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관련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 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 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에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 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이너스 옵션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에 따라 발코니 비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제4항에 의거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정보통신, 소방감리 |
| 상 호 | (주)동우이앤씨 |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세정이에프씨 |
| 금 액 | 7,889,750,000 | 1,357,412,869 | 1,701,7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 |
|-------------|------------------------------------|----------------------------|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상호 |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114471-0003240 | 110111-0002694 |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402호(장위동, 우성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X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제반 내용은 **2022년 9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층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특등급, 외관특화, 커뮤니티 통합 운영(1단지와 3단지, 2단지와 4단지 통합운영), 창호 사양 변경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변경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되고, 인허가청 협의 후 계획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양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현황]

- 단지 동측에는 한천로, 서측에는 돌곶이길, 남측에는 북부간선도로(고가)등이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한천로변 전체에 7m의 방음벽이 설치되며, 준공 시 소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높이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댐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1단지 서측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및 일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 세대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단지와 4단지 사이에 존치건물(삼익아파트, 12층)이 있어 인접 단지는 조망, 일조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바랍니다.
- 한천로(계획), 장위동길(계획) 및 3단지 남측12m도로(계획)는 인접 구역 개발 일정에 따라 도로가 준공 시 분양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선과 구역 경계선 사이의 부지는 기부채납 지역으로 시공사의 공사분이 아니며,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기반시설 등은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 북측도로, 2단지의 동측도로, 2단지 및 4단지 사이 도로, 4단지 서측도로 지중에 154kV의 한전송전선로가 설치되며, 101동 후면의 도로, 204동 인접한 사거리에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학교 및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기관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세대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급격한 수용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 학교[초등학교(서울장위초, 서울선곡초, 서울석관초로 분산 배정 계획, 단지 내 블록별·동별 배정계획이나 향후 입주시기의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학구도안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및 중학교(성북·강북 3학교군 내)]에 수용예정입니다. 고등학교 학군은 성북·강북 학교군에 해당합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 등)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학생배정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단지 내에 유치원이 설치되며 대지경계선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주차는 아파트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단지(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3동, 201동, 303동, 401동, 403동과 인접하여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1, 110, 201~4, 208, 209, 301동은 임대세대가 위치하며,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단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1단지 2단지 사이에는 장석어린이공원(가칭, 계획)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단지 2단지 사이에는 공공청사(계획)가 있어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천로변 106~110동, 304, 305동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조망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정화조가 설치되어 연도가 104, 211, 303, 401, 404동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연도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어 빛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1, 106, 107, 108, 301, 305동 측벽, 402동 정면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어 빛반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태양광 집광판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지의 문주에 인접한 105, 106, 205, 212, 303, 304, 401, 403동의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 106, 303, 304동은 맞은편 단지 주차장의 야간 차량 출차 시 전조등이 세대 내부로 비칠 수 있습니다.
- 105동 6호세대 측벽에 접하여 CLUB XIAN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5호, 102동 2~3호, 103동 2~3호, 104동 2~3호, 105동 2~3호, 208동 5호, 210동, 3~4호, 211동 3~4호, 302동 3~4호, 303동 3~4호는 측벽에 접하여 엘리베이터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의 세대는 시설 운영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세대에서의 화재 시 대피방법은 49㎡는 승강장의 2개의 계단을, 59㎡A/B/C, 72㎡, 84㎡A/B/D, 94㎡A/는 옆세대로의 통로를, 59㎡D, 84㎡F, 97㎡는 하향식피난구를, 59㎡E는 대피공간을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습니다. 84㎡C/E는 1,2층 세대로 별도의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도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매연, 조망방해 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6, 303, 304동은 지하주차장 경사도와 접하고 있어 저층의 인접세대는 계약전 모형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404동 1,2,3호 전면에 유치원(3층)이 위치하여 조망, 소음 및 일조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04동은 복도식 주동평면입니다.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외벽 및 지붕층에 공용부 전기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장,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1. 옥상층 : 103동, 105동, 107동, 109동, 206동, 208동, 210동, 212동, 302동, 304동, 402동, 403동
 2. 지하2층 : EPS/TPS(102동, 107동, 210동, 302동, 402동, 403동), PIT(206동, 304동)
-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4단지에만 설치됩니다.
- 아파트 주동,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부대시설에 옥상조경과 측벽 녹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조경 상세계획은 옥상 및 측벽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주동부 옥상계획은 태양광 집광판 설치에 따라 위치 및 면적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단지외와 4단지 서측부 돌곶이역 연계 가로는 "돌곶이문화예술거리" 계획의 일환으로 가로변 심터 계획과 진입로가 추가계획될 수 있으며, 경계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 편의를 위해 쓰레기분수거함의 위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단지(외관계획)]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일부 동(110, 305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
- 일부 동(106, 107, 108, 109, 304동) 외벽에 유리마감재(커튼월룩)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측벽 및 외벽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별 설치개소 및 형태,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CLUB XIAN)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CLUB XIAN)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카페&라운지 등), 부속동(아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CLUB XIAN)은 일부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CLUB XIAN)은 1단지외와 3단지, 2단지외와 4단지를 통합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예정입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은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카페&라운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지하주차장은 통합운영,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아너스클럽은 각 단지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일반관리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운영비의 배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위4구역은 2016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제로에너지빌딩5급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자립율이 20% 이상이나 단지별로는 차이가 있으며, 실시설계 시 예상 소비에너지량의 증가 시 태양광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준공 후에 에너지모니터링을 일정기간 실시 예정입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 1단지 1,228대, 2단지 1,191대, 3단지 688대, 4단지 822대(근린생활시설 14대 및 유치원 8대 포함), 전체 3,929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주차대수 동출입구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거푸집공법으로 시공되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1단지:급속4/완속22, 2단지:급속4/완속18, 3단지:급속2/완속10, 4단지 급속2/완속14, 총 76개소(급속12, 완속 64)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속전기차 충전설비 중 단지별 1개는 AC3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지하1층 주행도로 유효높이는 2.7m (주차구역 제외) 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지하2,3층의 차량통로 유효높이는 2.3m (주차구역 제외)입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의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2단지는 2개소, 3,4단지는 1개소입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402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4단지 지하1층에 위치하여, 단지출입구, 통로 등을 아파트와 같이 사용합니다.

[단위세대(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단지별로 공용면적이 상이하야 계약면적이 다르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84㎡B 212동 19층, 84㎡D 중 102/103동 22층, 104동 23층, 105동 20층 세대는 상부세대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A, 59㎡E, 72㎡, 84㎡, 94㎡, 97㎡의 다용도실 문은 주방쪽으로 열립니다,
- 옥외공간타입 상부 세대는 우천시 옥외공간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튀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등 외벽에 인접하여 수전, 배수 선홍통이 설치되는 경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출입용 분합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발코니세대 : 비확장세대]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유상)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구성상 플러스 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선택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의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세대는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준공 이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가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단위세대(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 옆 발코니 출입문의 옵션에 따라 재질,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가 시공됩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옵션 및 플러스옵션 등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목마루의 특성상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하자가 아닙니다.
-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종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선택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 제공되며, 옵션비용은 해당 금액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옵션 선택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형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다용도실 일부구간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 됩니다.
- 마감 및 조명 옵션 선택 시 가구(냉장고장 상부)의 일부공간이 조명 점검을 위해 사용됩니다.

[건본주택]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59㎡B, 72㎡, 84㎡A/D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건립 타입인 59㎡B, 72㎡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라이트톤 스타일로, 84㎡A/D타입은 미디엄톤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라이트톤/미디엄톤 스타일옵션(벽, 바닥 등의 색상톤)의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색상/적용범위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타일옵션은 해당 주택형의 전실에 일괄 적용되며, 특정공간별 교차선택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 일반형 전자식스위치가 설치됩니다.

[기타사항]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시행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문의 **1833-2644**